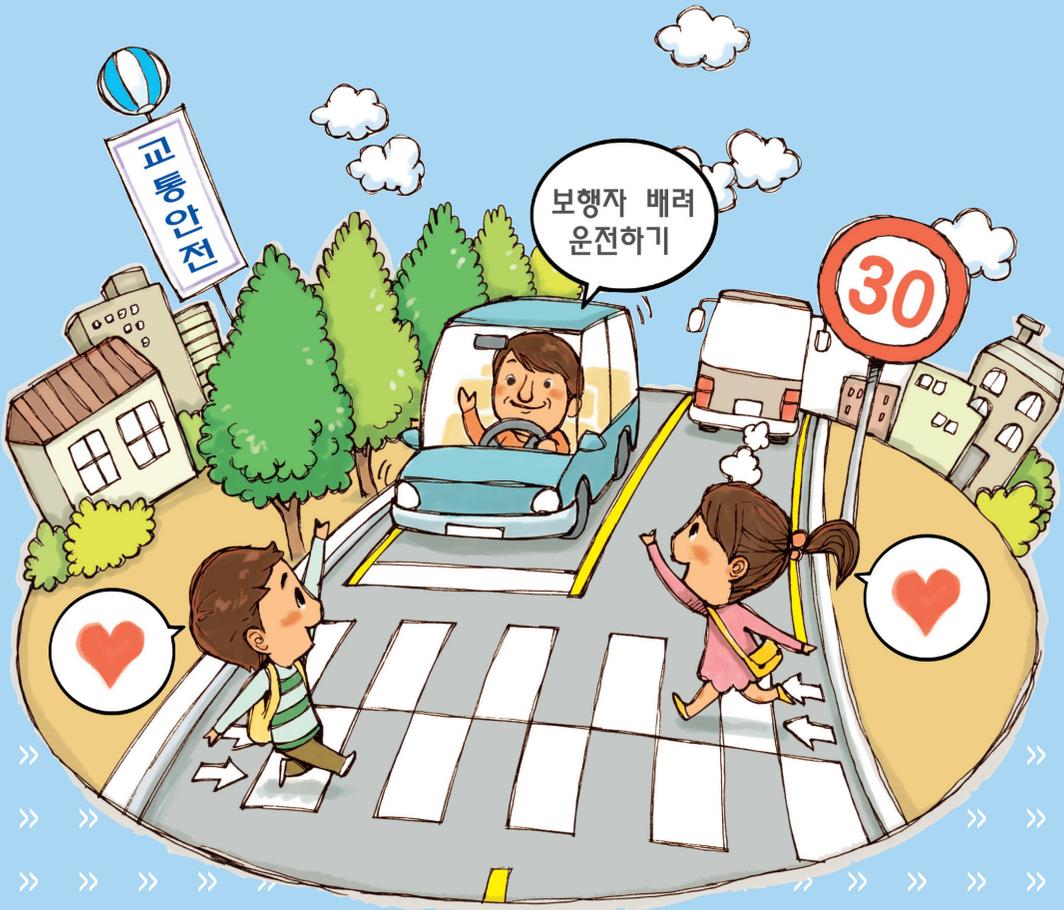


03 교통안전

● 슬/로/건

보행자를 배려하는 안전운전을
생활화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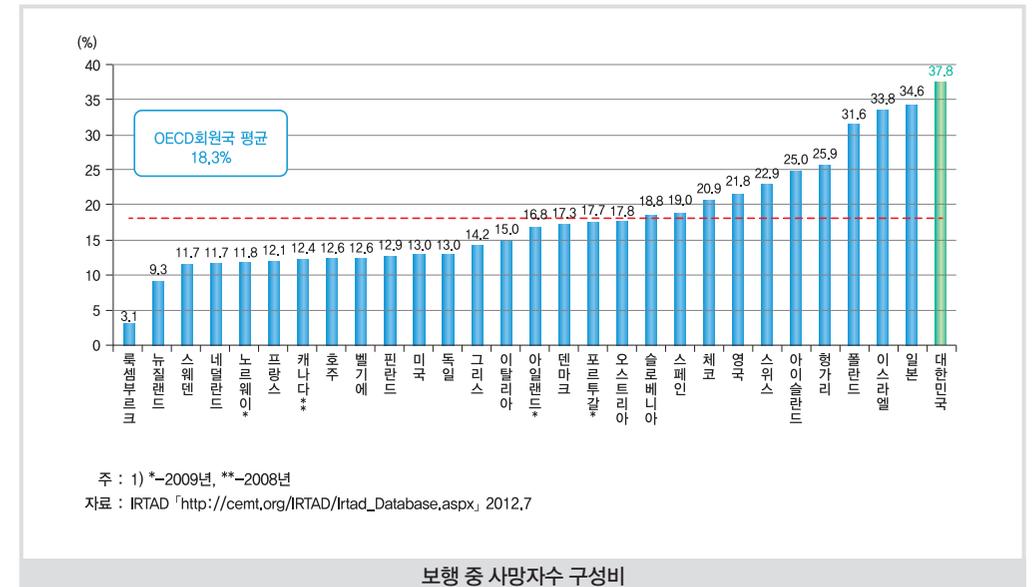
과제 3-1 보행자 배려 운전하기

1) 과제 개요

- 교통사고는 대부분 운전자의 조급한 마음과 부주의에서 비롯되므로 운전자들이 “보행자를 우선배려하겠다”는 마음으로 양보운전을 할 경우 운전자의 시야가 넓어져 교통사고위험이 대폭 감소
- 따라서 운전자들에게 자신이 과속, 난폭운전을 할 경우 “내 가족들도 한 순간에 교통사고를 당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전달하여 양보운전 실천을 유도

2) 보행자 사고 통계

- ① 우리나라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사망자가 40%에 육박함
- ② 2012년 OECD에서 발표한 각 국가별 보행자 사망자 비율은 룩셈부르크가 3.1%, 뉴질랜드 9.3%, 스웨덴·네덜란드 11.7%이고 OECD국가 평균은 18.3%인데 비해 한국은 37.8%의 비율을 보임
- ③ 어린이 교통사고의 경우도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사망자가 70%에 육박하고 있으며, 스쿨존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82%의 비율 차지



보행 중 사망자수 구성비

3) 선진국의 보행자 우선 정책 사례

- ① 1967년 일본 동경에서는 교통정책의 중심을 운전자에서 보행자로 전환함
즉, 모든 도로를 건설할 때 그동안의 「도로-차도=인도」를 「도로-인도=차도」로 바꾸어 보행자를 우선하도록 정책 전환
- ② 프랑스의 도로교통법 219조에 “50m이내 횡단보도가 없을 경우 보행자는 시계와 차량 속도를 고려해 긴박한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 차도를 횡단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합법화 할 정도로 보행자 우선 정책을 펼치고 있음.
- ③ 미국의 도로교통법에 횡단보도 진입시 반드시 좌·우를 확인한 후 보행자가 있으면 손으로 먼저 가도록 양보해야 하는 규정이 있을 정도로 보행자 배려 운전을 중요시 실제 운전면허취득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시 보행자를 발견한 후 양보운전을 하지 않으면 면허 시험에 불합격될 정도로 양보운전 강조

4) 보행자 배려운전을 위한 실천 수칙

- 첫째, 운전을 할 경우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항상 일찍 출발하여 마음의 여유를 갖고 방어운전 생활화
- 둘째, 횡단보도 진입시 반드시 정지선 준수
- 셋째,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 먼저 가도록 수신호 실시
- 넷째, 운전자용 녹색불이 들어와도 갑자기 뛰어드는 보행자가 없는지 좌·우 확인 후 출발
- 다섯째, 나부터 보행자 배려운전을 실천하며 가족, 이웃, 지인들에게 보행자 배려운전을 실천토록 적극 권장

5)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시 처벌 규정

- 도로교통법 27조 횡단보도에서 정지선 미준수 및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시 벌점 10점에 3만원 ~ 7만원까지 범칙금을 부과
 - ※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 자전거는 3만원이 각각 부과
 - ※ 일반도로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시 승합차 5만원, 승용차 4만원, 이륜차 3만원, 자전거는 2만원을 부과
- 상기 위반이 어린이 보호구역내 횡단보도에서 발생하는 경우 2배로 가중처벌되어 범칙금이 승합차의 경우 13만원, 승용차는 12만원 이륜차는 8만원 자전거는 6만원이 각각 부과
 - ※ 어린이보호구역내 일반도로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시 범칙금은 승합차는 9만원, 승용차는 8만원, 이륜차는 6만원, 자전거는 4만원을 부과

•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시 범칙금

위반지점	승합자동차 등		승용차 등		이륜차 등		자전거 등	
	일반도로	스쿨존	일반도로	스쿨존	일반도로	스쿨존	일반도로	스쿨존
횡단보도	7만원	13만원	6만원	12만원	4만원	8만원	3만원	6만원
일반도로	5만원	9만원	4만원	8만원	3만원	6만원	2만원	4만원

※ 스쿨존의 시간은 오전 8시 ~ 오후 8시까지만 적용

Tip

보행자의 안전보행 체크리스트

항목	A등급(20점)	B등급(16점)	D등급(8점)	F등급(4점)	자신의 등급
무단횡단	전혀 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 편이다	가끔 하는 편이다	항상 하는 편이다	
횡단보도 우측통행	항상 우측통행 한다	우측통행 하는 편이다	우측통행 하지 않는 편이다	우측통행 안전성을 전혀 모른다	
보행자 녹색불에 운전자와 맞추기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	녹색불이 들어와도 항상 운전자와 눈 맞추다	운전자와 눈 맞추는 편이다	거의 운전자와 눈맞추기를 안한다	전혀 눈 맞추기를 안한다	
운전자에게 손들어 의사표시하기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항상 손으로 수신호 한 후 건넌다	손으로 수신호 하는 편이다	거의 수신호 하지 않는다	전혀 수신호 하지 않는다	
차를 보면서 천천히 건너기	항상 차를 보면서 천천히 걷는다	차를 보면서 천천히 걷는 편이다	거의 하지 않는다	전혀 하지 않는다	

등급별 보행자의 교통사고 위험정도

등급	점수	운전자의 상태 및 교통사고 위험 정도
A 등급	85점 이상	교통사고 위험이 전혀 없는 안전한 보행자
B 등급	71-85점	사고 위험이 없는 안전한 보행자
C 등급	60-70점	일반적인 평범한 보행자
D 등급	45-59점	사고위험이 높은 위험한 보행자
F 등급	45점 이하	사고위험이 매우 높은 위험한 보행자

Tip

운전자의 자가 안전 점검 체크리스트

항목	A등급(10점)	B등급(8점)	D등급(4점)	F등급(2점)
안전띠착용 생활화	단속과 관계없이 매우 잘 매고 있다.	잘 매는 편이다.	잘 안 매는 편이다.	거의 매지 않고 다닌다.
양보 운전	양보를 매우 잘한다.	잘하는 편이다.	잘 안하는 편이다.	거의 양보를 안한다.
30km 서행운전 (스쿨존, 생활도로)	항상 서행한다.	서행하는 편이다.	서행 안하는 편이다.	전혀 서행 안한다.
차량의 정지선 준수	항상 준수한다.	준수하는 편이다.	준수하지 않는다.	항상 준수하지 않는다.
운전중 휴대폰	일체 하지 않는다.	안하는 편이다.	가끔 하는 편이다.	항상 한다.
음주 운전	전혀 하지 않는다.	안하는 편이다.	가끔 한다.	항상 하는 편이다.
전조등 조기 점등	상대방을 위해 항상 조기 점등 한다.	정시 점등 한다.	늦게 점등하는 편이다.	항상 늦게 점등한다.
차선변경 시 방향지시등 켜는지	항상 켜다.	켜는 편이다.	안 켜는 편이다.	거의 안 켜다.
횡단보도 앞 일단정지 또는 서행 여부	항상 한다.	하는 편이다.	하지 않는 편이다.	항상 하지 않는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결코 하지 않는다.	안하는 편이다.	가끔 한다.	항상 한다.

등급별 운전자의 교통사고 위험평가

등급	점수	운전자의 상태 및 교통사고 위험 정도
A 등급	A+	95~100점 교통사고 위험이 거의 없는 완벽에 가까운 최상류층 운전자
	A-	90~94점 상대방을 배려하는 인격운전을 하는 상류층 운전자
B 등급	B+	85~89점 양보·방어운전을 잘하는 안전운전형 운전자
	B-	80~84점 비교적 안전운전을 하려고 노력하는 안전운전형 운전자
C 등급	C+	75~79점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깨닫고 있는 노력형 평범 운전자
	C-	70~74점 무사 안일한 성격을 지닌 지극히 평범한 운전자
D 등급	D+	65~69점 상황에 따라 기분 내키는 대로 운전하는 하류층 운전자
	D-	60~64점 교통사고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하류층 몰상식 운전자
F 등급	• 59점 이하	지금 당장 교통사고를 낼 수 있고,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최하류층 난폭 운전자

과제 3-2 생활도로 30km/h이하 서행하기

1) 과제 개요

- 우리나라의 경우 교통사고의 80% 이상이 지방도로에서 발생하고 있고 전체 교통사고의 50% 이상이 차도폭 9m 미만의 도로에서 발생하는 등 생활도로에서의 교통안전이 중요

2) 실제 생활도로 사고 피해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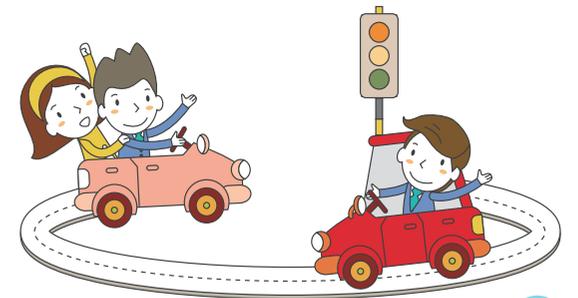
- ① 한국의 교통사고를 분석해보면 사고의 83%가 지방도로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전체 사고의 50% 이상이 차도폭 9m미만인 생활도로에서 발생
- ② 생활도로에서 사고다발 원인은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고 안전한 인도가 확보되지 않는 등 안전시설이 매우 부족하고 운전자가 좁은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과속으로 주행

3) 30km/h이하 서행운전 실천 수칙

- 첫째, 스쿨존, 실버존, 중앙선이 없는 좁은 생활도로 등 30km/h 이하 서행운전 지점을 먼저 파악
- 둘째, 어린이, 노인 등 교통약자들이 언제 어디서든 뛰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으로 스쿨존, 실버존에서 30km/h 이하로 서행운전 실천
- 셋째, 모든 생활도로에서 어린이 등 보행자를 만날 경우 반드시 손으로 먼저 가도록 양보

4) 차량 속도 위반 처벌 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보면 속도위반시 벌점 15점에 3만원 ~ 7만원의 범칙금을 부과
그러나 스쿨존에서 속도위반을 할 경우 범칙금 및 벌점 2배 부과



• 차량종류별 과태료(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6-2)

위반행위	승합자동차 등		승용자동차 등		이륜자동차 등		
	일반도로	어린이 보호구역	일반도로	어린이 보호구역	일반도로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 · 지시위반	8만원	14만원	7만원	13만원	5만원	9만원	
속도 위반	60km/h 초과	14만원	17만원	13만원	16만원	9만원	11만원
	40km/h 초과 60km/h 이하	11만원	14만원	10만원	13만원	7만원	9만원
	20km/h 초과 40km/h 이하	8만원	11만원	7만원	10만원	5만원	7만원
	20km/h 이하	4만원	7만원	4만원	7만원	3만원	5만원
주 · 정차위반	5만원 * 6만원	9만원 * 10만원	4만원 * 5만원	8만원 * 9만원	-	-	

* 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 또는 주차위반 했을 때 적용

• 차량종류별 범칙금(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7/9)

위반행위	승합자동차 등		승용자동차 등		이륜자동차 등		자전거 등		
	일반도로	어린이 보호구역	일반도로	어린이 보호구역	일반도로	어린이 보호구역	일반도로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 · 지시위반	7만원	13만원	6만원	12만원	4만원	8만원	3만원	6만원	
보행자 보호 불이행	횡단보도	7만원	13만원	6만원	12만원	4만원	8만원	3만원	6만원
	일반도로	5만원	9만원	4만원	8만원	3만원	6만원	2만원	4만원
속도 위반	60km/h 초과	13만원	16만원	12만원	15만원	8만원	10만원	-	-
	40km/h 초과 60km/h 이하	10만원	13만원	9만원	12만원	6만원	8만원	-	-
	20km/h 초과 40km/h 이하	7만원	10만원	6만원	9만원	4만원	6만원	-	-
	20km/h 이하	3만원	6만원	3만원	6만원	2만원	4만원	-	-
통행금지 · 제한위반	5만원	9만원	4만원	8만원	3만원	6만원	2만원	4만원	
주 · 정차위반	5만원	9만원	4만원	8만원	3만원	6만원	2만원	4만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적용

• 운전면허 벌점(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위반사항	일반도로	어린이보호구역
60km/h 초과	60점	120점
40km/h 초과 60km/h 이하	30점	60점
20km/h 초과 40km/h 이하	15점	30점
20km/h 이하	-	15점
신호 · 지시위반	15점	30점
보행자 보호 불이행	10점	20점



과제 3-3 졸음운전, 음주운전 예방

1) 과제 개요

- 운전이라 함은 심신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자동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정상적이지 못한 상태에서의 운전은 교통사고로 이어져 인명과 재산상의 손실을 입을 수 있음

2) 실제 졸음 · 음주운전 사고의 위험성

- 졸음이 쏟아지면서 잠깐 눈이 무거워지거나 운전 집중하기가 어려워진다면 졸음운전의 초기 증상임. 더 심해지면 도로표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순간적으로 멎해지는 현상 발생
- 졸음운전은 운전면허 취소수치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7%의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됨
- 또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짐에 따라 사고확률도 증가.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상태에서는 음주를 하지 않을 때보다 2배, 만취상태인 0.1% 상태에서는 6배, 0.15% 상태에서의 운전은 사고 확률이 무려 25배로 증가. 즉 소주 2잔 반(약 120ml) 정도를 마시고 운전하면 술을 마시지 않고 운전했을 때 보다 사고발생확률이 2배가 되는 것임
-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이 느끼는 것보다 더 많은 사고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본인에게는 자살행위이며 타인에게는 살인행위가 될 수 있음

3) 졸음운전 예방수칙

- 졸음이 올 경우 고속도로 졸음 휴게소를 이용
- 장시간 운전을 할 경우에는 음식을 과하게 섭취하지 않도록 하고 창문을 자주 열어 환기를 시킴
- 동승자가 운전자와 가벼운 대화를 시도하여 운전자의 졸음 예방
-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의 경우 단기간에는 졸음을 예방할 수 있으나, 성분이 떨어질 경우 오히려 더욱 피로가 심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과도한 섭취 자제
- 장거리 운전이 예정되어 있다면 전날에는 과로, 과음을 자제

4) 음주운전 예방 수칙(음주운전 예방 10계명)³

- 소주 한 병에 1500만원 : 소주 1병(7잔-혈중 알코올농도 0.15%)을 마시고 신호위반으로 4주의 인사사고를 내면 종합보험에 가입했어도 대략 1500만원 이상을 지출
- 점심 반주 3잔이면 면허정지 : 똑같이 마셨어도 혈중 알코올농도는 알코올 흡수 및 분해능력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상이
- 음주운전은 '퇴출1호' : 음주운전은 패가망신으로 이어지며 정부기관, 군, 기업체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조직원에 냉정하며 음주단속에 적발되면 아예 인사카드를 제외시켜 인사에 반영
- 연말 밤 12시~새벽 4시 운전 위험 : 밤 12시에서 새벽 4시 사이의 운전이 다른 시간대에 비해 피로운전을 할 가능성이 4배나 높으므로 무리한 운전으로 사고 위험이 높음
- 대리운전시 '알바' 조심 : 대리운전시 최소 10년 이상 경력자나 40대 이상 운전자를 요구
- 대리운전시 주차장 정위치까지 : 집 부근에서 자가 판단으로 운전하는 것은 금물. 반드시 주차장까지 대리운전자에 맡김
- 음주운전은 2차 사고의 주범 : 음주는 졸음과 부주의를 동반하기 때문에 대형교통사고의 주범이며, 음주피로로 인한 교통사고는 대부분 정면충돌을 일으켜 사망사고 위험 높음
- 출근길 음주운전도 조심 : 전날 만취했다면 출근길 운전 금물. 음주 후 최소 8시간이 지나야 단속기준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
- 차를 두고 출근 : 망년회 등 약속이 있는 날은 아예 차를 집에 두고 출근

5) 음주운전 처벌 규정

- 우리나라는 혈중알코올농도 0.05%이상 0.10%미만이면 운전면허 100일간 정지 및 벌금과 벌점을 부과, 혈중알코올농도 0.10% 이상이면 최소 3백만원의 벌금에 벌점 그리고 면허취소 처분 부과
- 미국은 각 주마다 처벌규정이 조금씩 다름. 그렇지만 음주 운전자를 무기 소지한 살인과

³ 스마트드라이빙 음주상식

동일하게 취급할 만큼 무겁게 처벌. 특히, 워싱턴주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발생하면 '1급 살인죄'를 적용 50년에서 종신형까지 처벌

- 일본은 음주운전을 과속, 무면허와 함께 교통 3악(惡)으로 규정. 음주 후에는 운전을 할 수 없음은 물론 운전자에게 주류를 제공하거나 권한 사람도 벌금형에 처함.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25~0.05%일 때는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만 엔 이하의 벌금과 30~180일 면허 취소, 알코올 농도가 0.05%이상일 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만 엔 벌금, 면허 취소 처분
- 핀란드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1개월분의 급여가 벌금으로 몰수되며, 독일은 3,000마르크, 한화 180만원 가량 벌금을 부과하여 이후로도 몇 개월간 월급을 납입케 하고 있고, 호주는 신문에 고정란을 만들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들의 이름을 기재하여 공개망신을 줌



Tip

이런 경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 사례1**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 농도 0.05%)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다 적발된 경우?
 형사처벌 :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
 행정처분 : 벌점 130점으로 운전면허 취소(음주운전 100점+중앙선침범 30점)벌점 초과 되어 면허 취소된 경우 처분 후 1년간 운전면허 취득 제한
- 사례2**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 농도 0.08%)에서 신호대기중인 상대방 차량을 추돌하여 운전자가 다치고 차량이 파손된 경우
 사고처리 : 종합보험에 가입(합의)했어도 형사입건(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사처벌 :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피해자 사망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행정처분 : 운전면허 취소처분(혈중알코올 농도가 0.1% 미만이라도 인사사고 발생 시 면허 취소)
- 사례3** 아파트 주차장, 학교 운동장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음주운전한 경우?
 형사처벌 : 음주운전 처벌규정(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적용할 때의 운전은 도로 및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하므로 형사처벌 대상임
 행정처분 : 행정처분 대상 아님('입주민 외에 일반인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없는 아파트 주차장은 도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법', 대법원 2013. 10.11. 선고 2013두 9359 판결)
- 사례4** 제1종 보통 운전면허와 제1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가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승합차를 음주운전하다 적발된 경우 대형면허까지 취소되는지?
 보통면허, 대형면허 둘 다 취소('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교통법규의 준수 또는 주취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예방이라는 공익목적 실현의 필요성이 더욱 큼' 대법원 1997.3.11. 선고 96누 15176 판결)
- 사례5** 음주단속시 술 깬 시간을 벌기 위해 측정을 거부한다면?
 음주측정 불응죄로 1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위드마크'공식을 이용하여 운전당시 혈중알코올농도 계산하여 처벌가능합니다.
 ※ 위드마크 공식 : $C=A / (P \times R)$
 C : 혈중알코올농도(%) A : 섭취한 알코올양(음주량×술도수×0.7984)
 P : 대상자 체중(kg) R : 성별계수 (0.6~0.7)